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기준

제정	2011. 11. 22
개정	2013. 12. 16
개정	2014. 03. 21
개정	2014. 11. 25
개정	2015. 05. 29
개정	2016. 10. 11
개정	2018. 06. 01
개정	2020. 10. 05
개정	2021. 11. 0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이 기준은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험관리·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만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관련내규 및 시장 관행의 순서로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운용관련 담당자라 함은 자산운용부문(Front Office),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부문(Middle Office), 회계 및 지원 부문(Back Office)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 예치금,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3. “단기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자금을 말한다.

- 가. 현금성자금 : 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금
- 나. 유동성자금 : 운용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금
- 4. “중장기자금”이란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을 말한다.
- 5. “은행권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삭제)
 - 마. (삭제)
- 6. “위탁운용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업(業)”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7. “판매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신탁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득한 회사를 말한다.
- 8. “연기금투자펀드”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펀드로 구성된 재간접투자제도를 말한다.
- 9. “직접투자”라 함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산운용 담당자가 투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0. “간접투자(위탁운용)”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위탁운용사가 투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1. “국내신용등급”이란 국내에 등록된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한다.
- 12. “목표수익률”이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한 목표치이며, 전략적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수익률로 정의된다.

제 2 장 자산운용위원회

제4조(설치) 기금은 자산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전반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구성)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1. 기금관리부장, 리스크관리부장
2. 자산운용, 기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장이 선임한 외부전문가

제6조(임무)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산운용전략에 관한 사항
2. 거래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등

제7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 담당자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집일시
2. 출석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출석자의 의견
4. 심의내용, 표결 등의 의결결과

③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자산운용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자산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자산운용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개최 안건을 보고하고,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유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산운용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의 준수 의무) 자산운용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2.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자산운용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4. 자산운용위원회 각 위원은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산운용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과제 등을 수행 할 수 없다.
6. 자산운용위원회의 각 위원은 1호 내지 5호의 의무와 관련하여 <별표 6>의 서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금의 운용

제9조(운용방향) ① 기금은 설치목적에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 등 업무 운영상 필요한 지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유동성자금을 확보한다.

제10조(자산배분원칙) ① 기금의 자산배분은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배분은 전체 운용자산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단기자산과 중장기 자산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간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자산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별 및 투자방법별 배분계획
2. 적정 유동성 규모
3.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4. 기준수익률
5. 기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자산운용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운용방법) 여유자금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은행법」에 의한 은행, 국채·공채 또는 그 밖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매입을 통해 운용한다.

제13조(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기금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지침상의 자산배분을 감안하여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을 활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간접투자방식으로 외부 위탁 운용할 수 있다.

1. 운용대상 자금의 규모 확대, 제도의 변경 등으로 내부운용이 비효율적일 때
2. 운용자금이 소규모로 축소되어 내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비용에 비하여 외부위탁 운용 시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정자산군에 대한 투자 시 운용상의 전문성이 요구될 때
4.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투자전략의 다변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연기금투자풀에의 운용

제14조(현금성자금의 관리) ①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비 및 재보험금지급 등 현금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정 현금성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매월 월간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제1항에 따른 현금성자금 규모의 유지를 고려

하여야 하며, 자금의 입출금이 용이한 금융상품 중심으로 운용한다.

제15조(유동성자금의 관리) ① 3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예상되는 재보험금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정 유동성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동성자금은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수익성이 높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한다.

제16조(중장기자금의 관리) 중장기자금은 현금성자금 및 유동성자금 이외의 자금으로서 금융시장 전망과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중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한다.

제17조(운용상품의 선정기준) 운용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자산운용지침의 투자대상 자산군 중 기금의 운용여건에 따라 공공성·안정성·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8조(만기도래전 중도해지 기준) 운용중인 투자상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다.

1.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2. 금리, 주가, 환율, 다른 투자의 수익률, 자금조달구조 등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또는 투자적격등급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4. 법령·규정·지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5. 위험관리·성과평가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기준의 “붙임 1. 위기상황매뉴얼”의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6. 신용악화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만기까지 보유 시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 장 은행권 금융기관 운용

제 1 절 평가 및 선정

제19조(선정 대상) ① 운용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은행권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기준 제3조제5호의 은행으로 한다.

② 자금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점(본점직할 포함) 또는 여의도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평가 및 선정 절차) ① 은행의 평가는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은행의 선정은 자산운용위원회가 심의한 외부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자산운용담당부서에서 평가 후 확정한다.

③ 은행의 선정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각 은행별 총 평점은 ‘<별표 1>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평점결과를 ‘<별표 4> 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에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3. 자산운용 가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리를 조사하여 금리상위 순위별로 예치한도를 차등화하여 운용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B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절 운 용

제21조(투자대상) 은행에 대한 투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예금
2. 양도성예금증서(CD)
3. 환매조건부채권(RP)
4. 수시입출식예금(보통예금, MMDA 등)
5. 기타 은행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금융상품

제 5 장 직접투자

제 1 절 주식투자

제22조(운용원칙) 주식 직접투자는 내재가치가 우량한 종목에 대한 장기투자를 원칙으로 하여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기준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가능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한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으로 신용등급 A이상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2년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한 종목
2. 편입시점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천억 원 미만인 종목
3. 자본금 300억원 미만인 종목
4.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인 종목
5.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 (기 투자 종목이 향후에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기타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제24조(투자가능종목군의 구성) ① 주식 직접 투자 시 투자가능 종목군 및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자가능 종목군 및 모델포트폴리오 구성과 변경은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가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조정하고 이를 자산운용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종목별 투자한도) ①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각각의 발행 주식 총수의 5/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② 동일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가기준 보유 잔액 총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10/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③ 주가상승 등으로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26조(보유주식의 위험관리) ① 보유주식의 시장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운용담당자는 장부수익률이 한국거래소에서 정한 업종지수의 수익률에 비하여 15%포인트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종목에 대하여 특이사항을 점검하여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운용담당자는 장부수익률이 15%이상 하락하고 업종지수 수익률에 비하여 15%포인트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하여 특이사항 등을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결정에 따른다.

3. 장부수익률이 20%이상 하락하고 업종지수 수익률에 비하여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종목은 5영업일 이내에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증가를 기준으로 하며 유상증자시 장부가격은 권리락 시점부터 청약완료시까지 시장가격을 주당 권리락 금액만큼 조정하여 적용한다.

제27조(유상증자 참여 및 매수청구권 행사) 유상증자의 참여 및 매수청구권의 행사는 기금이 보유한 주식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후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 절 채권투자

제28조(운용원칙) ① 채권운용은 가급적 만기 보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② 채권운용은 채권종류별, 발행기관별 및 만기구조별로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③ 채권운용은 안정성을 고려하여 수익성 대비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매도할 수 있다.

1. 평가이익의 실현

2. 차익거래 및 교체매매

제29조(투자가능채권) 직접투자가 가능한 채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권에 한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하 “특수채”라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금융채”라 한다)
 - 가. 한국산업은행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다. <삭제>
 -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다.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하“여신금융채권”이라 한다)
5.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하“회사채”라 한다)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된 유동화증권(이하“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 한다)
7. 기업어음(CP)

제30조(투자대상의 적격기준) ① 제2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신용등급이 A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29조제7호는 A2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보증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발행기관의 국내신용등급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채권은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국내신용등급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평가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⑤ 신용등급은 채권에 부여된 신용등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에 관하여 각 신용평가기관별로 부여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또는 준거자산에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한다.

제31조(종목별 투자한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은행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은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특수채, 국내신용등급이 AA+이상 금융채 및 AAA인 회사채의 경우에는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30/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③ 제26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 채권 발행 총액의 10/10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 ④ 제1항 내지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는 발행기관 자기자본의 10/100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다.
- ⑤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한도 계산시 은행권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치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⑥ 채권 발행회사의 자기자본 변경 등으로 투자한도 초과시 조속히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 3 절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

제32조(운용원칙) ①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는 다양한 상품구조를 활용하여 수익창출의 기회를 확대하고 운용자산의 위험요소에 대한 헤지(Hedge) 수단으로써 투자한다.

② 신종증권 및 주식관련채권등의 투자는 고도화된 상품구조를 감안하여 내재된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33조(신종증권의 투자) ① 신종증권에 대한 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증권에 한한다.

1. 금리, 신용, 주가(주가지수를 포함한다), 상품 및 통화 등의 준거자산 가치에 연계되어 가치가 변동되는 증권("연계신종증권"이라 한다)
2. 파생상품이 내재된 증권("구조화신종증권"이라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대상("기타신종증권"이라 한다)

② 원금 비보장형 신종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주식관련채권 등의 투자) 채권·주식의 직접투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채권("주식관련채권"이라 한다) 및 신주인수권에 투자하거나 보유주식의 권리행사로 주식관련채권 및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3.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4.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
5. 그 밖의 주식에 연계된 채권(Equity-linked Note)

제 6 장 간접투자

제 1 절 총 칙

제35조(투자대상) ① 간접투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펀드
 2. 특정금전신탁상품, 금전신탁상품
 3. 기타 간접투자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금융상품
- ② 제1항제1호 위탁펀드의 운용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형별 세부내용은 연간 간접투자계획에서 정한다.

1. 채권형
2. 채권파생형
3. 주식형
4. 주식파생형
5. 혼합형
6. 혼합파생형
7. MMF 등

제36조(투자방법) ① 위탁펀드는 사모단독펀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기금투자자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재간접형펀드 구조를 감안하여 사모단독 이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일임투자의 경우에는 관련 계약서에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수수료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7조(간접투자계획의 수립) ① 연간간접투자계획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을 감안하여 자산운용계획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연간간접투자계획은 운용유형별 투자 계획, 간접투자기관의 선정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연간간접투자계획은 국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 또는 연간 자산운용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간접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중 허용위험한도, 위험관리 등은 위험관리 담당부서장이 정하되, 허용위험한도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 관련사항은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시 편입가능자산은 이 기준 또는 연간자산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8조(간접투자기관의 평가 및 선정) 간접투자기관의 평가 및 선정은 <별표 2> 부터 <별표 5> 까지의 위탁기관 평가기준 등에 의거하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한다.

제39조(만기연장) 위탁펀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용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유형을 달리하여 만기 연장할 수 있다.

1. 연간간접투자계획상 운용방식 변경이 정해진 경우
2. 운용수익률 제고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 절 위탁운용사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제40조(선정 및 평가 시기)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를 포함한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평가는 ‘<별표 3> 운용사 평가기준’ 또는 ‘<별표 5> 연기금투자플 주간운용사 자금배분기준’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효율적인 투자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41조(선정 및 평가절차)** ① 수탁고 1조원 이상인 운용사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 ② 위탁운용사는 지원유형별로 제안서심사를 통해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며,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 ③ 운용유형별 평점 합계순위를 기준으로 '<별표 3> 운용사 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한다.

제42조(투자한도 및 사후관리) ① 등급별, 운용사별 투자한도는 '<별표 4> 등급 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임계좌에 대한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운용사 및 연기금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현금성자금 운용금액은 투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기금투자자의 경우 등급별 한도는 A등급을 적용하되, 운용사별 투자한도의 적용은 배제한다. 또한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연기금 투자자에 우선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선정 제외 또는 평가등급 변경 등으로 인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일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⑤ 위탁 후 운용사에 대하여 수시 및 주기적 점검과 제출주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사의 운용보고서 평가를 통해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다만, 연기금투자자 주간운용사의 경우 제37조에 의한 연간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일 단위 : 일별 거래내역 점검(Guideline 준수여부), 운용성과 등
2. 주 단위 : 포트폴리오 현황, 운용성과 등
3. 월 단위 : 포트폴리오 현황, 운용성과, 주요 매매종목, 손익분석, 운용전략, 시장전망 등

⑥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운용사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도환매, 해소 요구, 위탁자금 회수 또는 운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6개월경과 이후 운용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의 70% 이하인 경우
2.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운용기간 중 2회 이상 'C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 제43조(거래정지)** ① 운용실적 저조 또는 간접투자지침 위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회수된 펀드의 위탁운용사에 대하여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간 해당 유형의 신규거래를 중지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용유형 및 등급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3 절 판매회사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제44조(선정 및 평가 시기) 판매회사의 선정 및 평가는 ‘<별표 2> 판매사 평가 기준’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산운용 담당부서장이 효율적인 투자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5조(선정 및 평가 절차) ① 판매회사의 선정 및 평가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50%이상이고 총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회사를 평가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판매회사는 운용유형에 관계없이 제안서심사를 통해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최종선정하며, 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심사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평점 합계순위를 기준으로 ‘<별표 4>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에서 정한 바에 따라 A, B, C등급으로 분류한다.

④ 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시에는 <은행권 평가기준>에 따른다.

제46조(투자한도) ① 등급별, 판매사별 투자한도는 ‘<별표 4>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일임계좌에 대한 투자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회사 및 연기금투자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현금성자금과 은행권 확정금리형(정기예금, 정기예금, CD, 환매채 등) 운용 금액은 판매회사의 투자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선정 제외 또는 평가등급 변경 등으로 인하여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평가일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별표 1>

은행권 금융기관 평가기준

1)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재무구조	총자산규모순위	30	·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결산서상 총자산 적용
	BIS자기자본비율	20	·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BIS자기자본비율적용
	고정이하여신비율	20	·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고정이하여신비율 적용
	총자산이익률	20	· 평가일 현재 가장 최근 총자산이익률 적용
신용등급	국내신용등급	1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3개 기관의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등급 중 최하등급 적용
합 계		100	

2)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5위 미만		
총자산규모순위 (연결 F/S 기준)	30	20	10	0		
BIS자기자본비율	13%이상	12%이상	11%이상	10%이상	10%미만	
	20	15	10	5	0	
고정이하여신비율	1.0%미만	1.4%미만	2%미만	2.5%미만	3.0%미만	3.0%이상
	20	16	12	8	4	0
총자산이익률	1.0%이상	0.8%이상	0.6%이상	0.4%이상	0.4%미만	
	20	15	10	5	0	
국내신용등급	AAA	AA+이상	A+이상	BBB이상	BB-이하	
	10	8	6	4	0	

※ 총점이 동일한 경우 총자산규모순위,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총자산이익률, 국내신용등급 순으로 고득점 기관을 상위순위로 평가

<별표 2>

판매사 평가기준

평가 항목	배 점	세부평가항목 및 배 점		평가내용
재무 안정성	30	영업용 순자본 비율	6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자기자본비율	6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총자산 이익율	6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총자산규모	6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시장지배력	20	수익증권 총 판매실적	5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법인고객 수익증권 판매실적	5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연기금 관련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실적	10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운용성과	20	판매상품 운용성과	20	탁월 20점, 우수 16점, 보통 10점, 미흡 4점, 기타 0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능력	30	투자 상품 수요 파악 및 설계 능력	10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3점, 미흡 0점
		판매상품의 관리정도	10	판매상품의 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3점, 미흡 0점
		대 기금제공서비스	10	자산운용 및 투자정보제공 등 서비스, 판매 상품 관련 업무처리 서비스 탁월 10점, 우수 7점, 보통 3점, 미흡 0점

※ 'P_{△△} 이상' 은 평가항목 운용사 실적어, 정규분포하 누적확률값 △△% 이상인 경우

※ 극단치(Outlier) 처리방법 : 항목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운용사 실적을 극단치로 정의 하고, 발생원인 등을 감안하여 0점을 하한으로 평점 부여

<별표 3>

운용사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평가내용
재무 건전성	15	자기자본/자본금 비율	3 300% 이상(3점), 200% 이상(2점), 100% 이상(1점), 100% 미만(0점)
		자기자본 이익율	3 20% 이상(3점), 10% 이상(2점) 5% 이상(1점), 5% 미만(0점)
		최근 3년간 순이익 현황	3 최근3년 연속흑자(3점), 최근2년 연속흑자(2점), 최근1년 연속흑자(1점), 기타(0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3 50% 미만(3점), 100% 미만(2점) 150% 미만(1점), 150% 이상(0점)
		총 수탁고	3 (혼합형, 주식형) 5,000억이상(3점), 3,000억이상(2점), 2,000억이상(1점), 2,000억미만(0점) (채권형) 1조 이상(3점), 7,000억이상(2점), 4,000억이상(1점), 2,000억미만(0점)
운용조직 및 전문인력	20	운용전문 인력수	5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운용전문 인력 수 보유현황 10명이상(5점), 7명이상(3점), 5명이상(1점),기타(0점)
		업계평균경력	5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1인당 운용규모	5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해당 지원유형 수탁고	5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과거 운용 성과	20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5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운용사평균 대비 RRAR	10 P ₇₀ 이상 : 배점의 100% P _{30~70} : 배점의 70% P ₃₀ 미만 : 배점의 30%
		과거 연기금 운용실적	5 탁월(5점), 양호(3.5점), 보통(2.5점), 미흡(0점) (운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3점 부여)

투자 및 리서치 프로세스	30	투자시스템 현황	8	DB 및 모델 보유, 모델의 우수성/활용도 (실질적으로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여부) (배점구분 : 상8점, 중5점, 하2점)
		투자 의사결정 체계	8	투자의사결정체계의 합리성, 의사결정의 집중도, 의사결정과정상 역할 및 책임범위, 조직관리의 효율성 (배점구분 : 상8점, 중5점, 하2점)
		리서치 체계	8	자체 리서치 조직 및 인력 보유 유무 내 외부 리서치 실제 활용도 및 네트워크 구축 (배점구분 : 상8점, 중5점, 하2점)
		운용사 운용스타일	6	운용스타일의 정립(명확성, 일관성)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15	리스크 관리 체계	7.5	위험관리기준, 권한, 기능수행절차 등 (배점구분 : 상7.5점, 중4점, 하1.5점)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	7.5	컴플라이언스기준, 권한, 기능수행절차 등 (배점구분 : 상7.5점, 중4점, 하1.5점)

※ 'P△△ 이상' 은 평가항목 운용사 실적, 정규분포하 누적확률값 △△% 이상인 경우

※ 극단치(Outlier) 처리방법 : 항목평균과의 차이가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운용사 실적을 극단치로 정의하고, 발생원인 등을 감안하여 0점을 하한으로 평점 부여

※ RRAR(Relative Risk-Adjusted Return) = (펀드평균수익률—동일유형펀드평균수익률)/동일유형초과수익률의 표준편차

<별표 4>

등급배분 및 개별기관별 투자한도(외부위탁 금융기관별 공통사항)

등급	등급배분	개별기관별 투자한도
A	평가순위 상위 30%이내	전체운용금액의 40%
B	평가순위 상위 60% 이내로서 A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운용금액의 30%
C	A급이나 B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규투자제한

※ 전체운용금액이라 함은 은행권 금융기관, 판매사, 운용사별로 각각 배분된 금액을 말함

<별표 5>

연기금투자상품 주간운용사 자금배분기준

가 MMF 상품

- ◆ MMF 상품운용시 주간사간 배분비중은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른 주간사간 획득점수를 비롯하여 투자시점의 금융시장, 제안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 평가항목은 연기금투자상품 펀드평가사가 제공하는 결과 값을 활용하며, 필요시 주간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자체 산정·적용할 수 있음

1) 평가항목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	비고
정량평가(100)	상품판매능력 및 상품안정성	MMF 수탁고(60)	구간별 점수화
	위험조정성과	MMF 샤프비율(40)	구간별 점수화

2)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

① MMF 수탁고

수탁고	점수	비고
2조원 이상	60	평가일 이전 최신자료 활용
1.5조원 이상 ~ 2조원 미만	50	
1조원 이상 ~ 1.5조원 미만	40	
5천억원 이상 ~ 1조원 미만	30	
5천억원 미만	20	

② MMF 샤프비율

샤프비율 구간	점수		비고
	A주간운용사	B주간운용사	
$A-B > 0.3$	40	0	평가일 이전 최신자료를 활용하며, 무위험수익률은 통안증권 365일물·기준금리 등 사용
$0.2 < A-B \leq 0.3$	35	5	
$0.1 < A-B \leq 0.2$	30	10	
$0 < A-B \leq 0.1$	25	15	
$A-B = 0$	20	20	

* $A \geq B$ 라고 가정

나

채권형·혼합형·주식형 상품

- ◆ 채권형·주식형·혼합형 상품운용시 주간사간 배분비중은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아래의 평가항목에 따른 주간사간 획득점수를 비롯하여 투자시점의 금융시장, 제안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 평가항목은 연기금투자폴 펀드평가사가 제공하는 결과 값을 활용하며, 필요시 주간사로부터 자료를 요구하여 자체 산정·적용할 수 있음

1) 평가항목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	비 고
정량평가(100)	전체기금 운용성과(100점)	BM대비 초과성과(50점)	구간별 점수화
		위험조정성과 샤프비율(50점)	구간별 점수화

※ 복수 주간사 중 한 곳이 유형별 전체기금 운용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주간사 0점 처리

2)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

① BM대비 초과성과

유형명	점수부여기준				
	50	40	30	20	10
· 채권형	0.75%p이상	0.5%p이상	0.25%p이상	0%p이상	0%p미만
· 주식 및 혼합형	3%p이상	2%p이상	1%p이상	0%p이상	0%p미만

② 위험조정성과_샤프비율

샤프비율 구간	점 수		비 고
	A주간운용사	B주간운용사	
$A-B > 0.3$	50	0	평가일 이전 최신자료를 활용하며, 무위험수익률은 통안증권 365일물· 기준금리 등 사용
$0.2 < A-B \leq 0.3$	45	5	
$0.1 < A-B \leq 0.2$	40	10	
$0 < A-B \leq 0.1$	35	15	
$A-B = 0$	25	25	

* $A \geq B$ 라고 가정

서 약 서

본인은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 위촉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
-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보험기금 자산운용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 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발주하는 법률자문, 소송대리,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 속 :

서 명 :

(인/서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